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0. 6. 19(금) 10:00

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
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예비비 지출 현황

가. 지출내역

(단위: 원)

부서명	사 업 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 출 사 유
계		14,950,000	13,907,000	1,043,000	
지 역 경제과	기업지원센터 운영	14,950,000	13,907,000	1,043,000	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

나. 검토의견

-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운영 1건에 총 1,390만 7천원을 지출하였음.
지출 사유는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,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29조(예비비)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9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